

서울고등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20358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20358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가합55897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홍성아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H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준

2. I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인준

3. 주식회사 J

4. K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J의 공동소송참가인, 피항소인

L 주식회사

피고 3, 4와 피고 3의 공동소송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오훈

변론종결 2024. 3. 14.

판결선고 2024. 5. 2.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가합55897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J의 공동소송참가인 L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J의 공동소송참가인 L 주식회사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원고의 위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J의 공동소송참가인 L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공동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들의 당사자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5. 30. 접수 제3415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8. 30. 접수 제1087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피고 I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5. 30. 접수 제341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다. 피고 J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9. 26. 접수 제1308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라. 피고 K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7. 30. 접수 제1688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마. 피고 J의 공동소송참가인 L(이하 '피고 L'라 한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3. 15. 접수 제400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공동원고 B, C, D, E, F, G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 중 위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H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5. 30. 접수 제3415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8. 30. 접수 제1087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I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5. 30. 접수 제341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J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9. 26. 접수 제1308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K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7. 30. 접수 제1688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L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3. 15. 접수 제400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와 같이 직권판단을 추가하고, 아래 3.과 같이 추가 · 삭제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 ·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 C, D, E, F, G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피고 L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그에 따른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L는 피고 J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원고와 피고 J 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다.

공동소송참가는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즉 타인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J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J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변론종결 전에 위 각 부동산을 양수한 피고 L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소송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인 피고 L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피고 L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한 공동소송참가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추가 · 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11쪽 21행 중 “갑 제1, 2, 9, 12, 24호증”을 “갑 제1, 2, 9, 12, 24, 33, 34, 3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4쪽 11행부터 15쪽 4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15쪽 5행 중 “다)”를 “나)”로, 17쪽 17행 중 “라)”를 “다)”로, 18쪽 5행 중 “마)”를 “라)”로, 18쪽 10행 중 “바)”를 “마)”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18쪽 17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주차장 통로 부분을 따라 천정에 설치된 전등은 전용부분 전등과 달리 원고가 관리하는 공용계량기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공용부분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전등에 어떠한 계량기를 설치할 것인지는 설계 당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 사항이어서 구분소유 성립 당시 구분의사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점, 위 전등은 비상시 탈출유도등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용계량기에 연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차장 통로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주차장 통로 부분이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관리소장 AA의 진술(갑 제33호증) 역시 위 전등에 원고가 관리하는 공용계량기와 차단기가 설치된 사실을 전제로 한 AA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4. 결론

피고 L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L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 L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 이희준, 판사 김광남

별지